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 E: yangyi.assembly@gmail.com | T: 02-784-8834 | F: 02-6788-6740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산업부,환경부 등) 날짜: 2023년 9월 26일(화)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10-4066-2554) 총 분량: 7쪽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건강피해 심각해 이주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총 11명)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윤영덕, 민병덕, 강민정, 김정호, 이용선, 최강욱, 김승원, 황 운하, 김용민, 민형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9.26.

발 의 자 : 양이원영 • 윤영덕 • 민병덕

강민정 · 김정호 · 이용선

최강욱 · 김승원 · 황운하

김용민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 으나, 현행법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6(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 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의 인접지역(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거나 이주 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주민(이주 정착지를 조성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민을 포함한다)에게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의6(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
	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
	전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
	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u>수 있다.</u>
	1.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
	1항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
	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통
	<u>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u>
	<u>한다)</u>
	2. 석탄화력발전소의 인접지역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
	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에 따른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지

를 조성하거나 이주 정착지로 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주 민(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 니하는 경우의 주민을 포함한 다)에게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